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제 1073 호】

2014년 05월 09일 (금)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려

입 법 예 고

고양시 입법예고
2014-1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기구> 인구100만 행복도시에 맞는 시민편의 관련 환경친화 사업소(4급)와 지적재조사 특별법(국토교통부)관련 토지정보과(5급), 지역별 거점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5급) 1개과 신설, 고양시의회 전문위원 직급 조정(6급→5급) 및 정책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추진단(6급), 주거복지팀(6급) 신설
- <정원증원> 법령개정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소득세전환 등 세제개편(8명),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체계('14.10) 개편 조사요원(12명), 지역현안(5명), 규제개혁(4명), 주거복지(3명) 등 총 32명의 정원을 증원함에 따른 조례개정

◆ 2014년도 총액인건비 : 37명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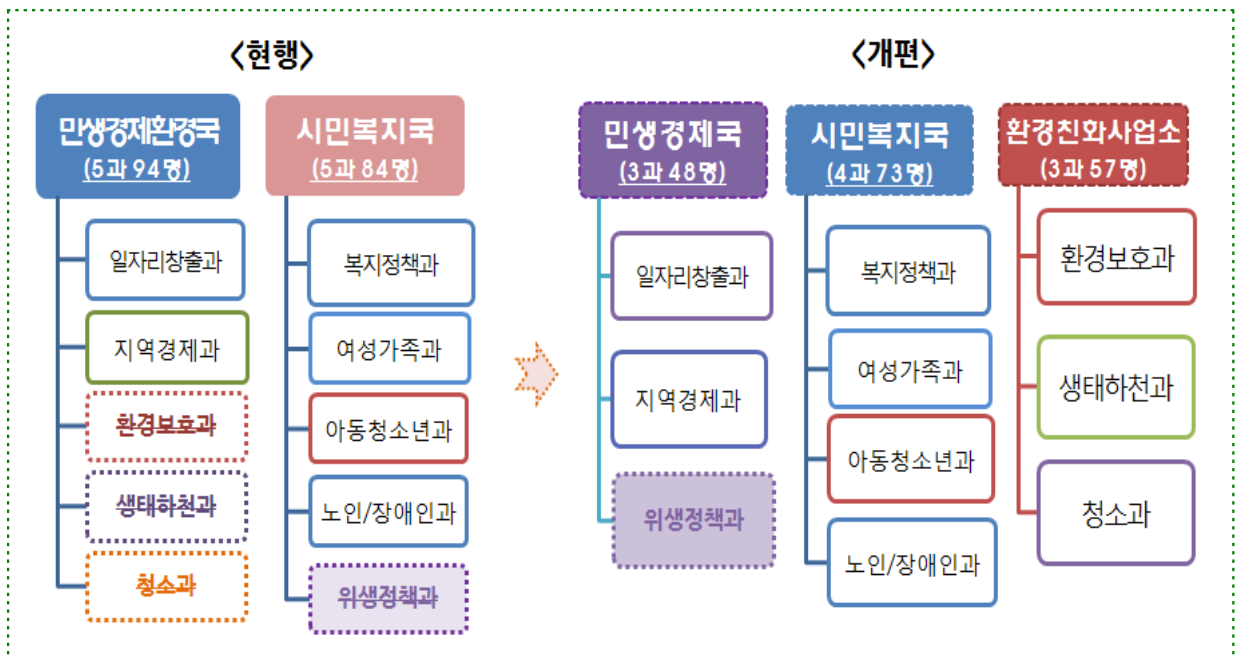
* <일반직> 증원인력 20명 중 소득세전환 8명, 건강보건센터 3명, CCTV관제 1명, 기타 8명

<사회복지직> 17명 증원('14년도 확충계획 사회복지인력 5명+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12명)

3. 주요골자

가. 사업소(4급) 신설에 따른 국 명칭 조정(안 제3조)

- 민생경제환경국 → 「민생경제국」으로 局 명칭 변경
 - 민생경제환경국 업무 중 “환경·생태·청소” 분야 사업소 신설로 조정



나. 사업소 및 본청 課 신설에 따른 국에 두는 課 조정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

- 민생경제환경국을 민생경제국으로 명칭변경하며, 기존 5개과 중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를 신설되는 「환경친화사업소」로, 시민복지국의 위생정책과를 민생경제국으로 기능·업무 재편
-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변경
-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에서 “지적·도로명 주소”분야를 분리, 토지정보과를 신설하여 기능·업무 재편, 뉴타운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변경
- 도서관센터의 “시설관리과와 운영과”를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으로 1과 증설을 통한 기능·업무 재편

다. 소득세전환, 기초생활보장, 지역현안(인력보강)에 따른 정원
총수 변경(안 제30조)

○ 정원 총수 당초 2,405명 → 변경 2,437명 (일반직 32명 증원)

1) 집행기관 : 2,373명 → 2,405명(증원 32명)

2) 의회사무국 : 32명

라.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32조, 별표5)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증 감
합 계		2,405	<u>2,437</u>	32
정무직	소 계	1	<u>1</u>	-
	시 장	1	<u>1</u>	-
일반직	소 계	2,373	<u>2,405</u>	32
	2급	1	<u>1</u>	-
	4급	17	<u>18</u>	1
	5급	119	<u>122</u>	3
	6급 이하	2,232	<u>2,260</u>	28
별정직	소 계	4	<u>4</u>	-
	5급	1	<u>1</u>	-
	6급상당 이하	3	<u>3</u>	-
지도직	소 계	20	<u>20</u>	-
	지도관	3	<u>3</u>	-
	지도사	17	<u>17</u>	-
연구직	소 계	7	<u>7</u>	-
	연구사	7	<u>7</u>	-

마. 한시정원 조정(안 제34조, 별표6)

○ 규제개혁추진단(6급) 신설에 따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정함.

관리기관별	소속부서	구분		정원(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본 청	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일반직 (1)	6급	1	2015. 7. 3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예산수반사항 : 749백만 원

구 분	총 계	일반직			기타직		비고
		4급	5급	6급이하	5급	6급이하	
인원(명)	32	1	2	29	-	-	-
소요액(백만원)	749	63	78	608	-	-	-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 출 처 : 고양시장 (인적자원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031)8075-2394 ◦ FAX : 031)8075-490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창조성장개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생경제국에 두는 과) ① 민생경제국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업지원,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및 산업행정,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5. 위생관리·장묘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4호로 한다.

제7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유아,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인력 개발 및 지위 향상에 관한사항
4. <삭제>
4. 다문화 가족과 구성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8. 생략

9.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사업소에 두는 과)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에는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를 둔다.

2.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를 둔다.

3.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에는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를 둔다.

4. 고양시 도서관센터에는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를 둔다.

제2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친화사업소

가.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나. 하천의 생태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라. 청소시설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의 “2,405”를 “2,437”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2,373”을 “2,405”로 하며, 제3호의 “2,405”를 “2,437”로 한다.

별표1, 별표5,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를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로 하고, 제2항의 “민생경제환경국(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시설관리업무)”를 “민생경제국(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시설관리업무)”으로 하고 환경친화사업소를 추가한다.

2.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중 “도시계획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뉴타운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3.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

4. 「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

5.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

6.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

7.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환경친화사업소장”으로, “민생경제환경국 생태하천과장”을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장”으로 한다.

8. 「고양시 지하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환경친화사업소장”으로 한다.

9.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환경친화사업소장”으로 한다.

10.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소장”으로 한다.

11.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을 “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으로 한다.

소 관 과		인적자원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팀 장 직위·성명	조직교육팀장 정 재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순 영 8075-2394

[별표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사업소명	위 치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고양시 도서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고양시 여성회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8
고양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5번지길89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39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2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개정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2,437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405	-					
	2급	1	1	-	-	-	-	-
	4급	18	7	1	3	4	3	-
	5급	122	35	4	5	12	27	39
	6급 이하	2,260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4	4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3	3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3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7	-					
	연구사	7	-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34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본청	창조성장개발국 (마이스산업육성과)	일반직 (1)	4급	1	2016.9.30	
<u>본청</u>	<u>정책기획담당관</u> <u>규제개혁추진단</u>	<u>일반직</u> <u>(1)</u>	<u>6급</u>	<u>1</u>	<u>2015.7.31</u>	

※ 단, 창조성장개발국(4급)은 인구100만 이상 증가에 따른 1국 증설 가능 시 상시기구로 전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u>민생경제환경국</u>,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창조성장개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u>민생경제국</u>, ...
제6조(민생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u>민생경제환경국</u>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환경 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를 둔다. ② <u>민생경제환경국장</u>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5. <u>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u> 6. <u>하천의 생태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7. <u>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u> 8. <u>청소시설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u>	제6조(민생경제국에 두는 과) ① <u>민생경제국</u> <u>위생정책과</u>를 둔다. ② <u>민생경제국장</u>은 1.~4. (현행과 같음) 5. <u><삭제></u> 6. <u><삭제></u> 7. <u><삭제></u> 8. <u><삭제></u>
제7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u>위생정책과</u>를 둔다 ② (생략) 1.~3. (생략) 4. <u>위생관리·장묘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사항</u> 5. <u>다문화 가족과 구성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u>	제7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삭제></u> 4. <u>(현행 제5호와 같음)</u>

현행	개정안
제8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u>교육지원과</u> ,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생략)	제8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u>평생교육과</u>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u>뉴타운사업과</u> 를 둔다. ② (생략) 1.~6. (생략) 7. <u>뉴타운사업</u> 에 관한 사항 8. (생략) 9. 도시경관 및 <u>공공시설물 디자인</u> 에 관한 사항 <u><신 설></u>	제11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u>도시재생과</u> , <u>토지정보과</u>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u>도시재생사업</u> 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9. 도시경관 및 <u>공공디자인</u> 에 관한 사항 10. <u>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사항</u>
제22조(사업소에 두는 과) (생략) 1.~2.(생략) <u><신 설></u> 3. 고양시 도서관센터에는 <u>시설관리과</u> , <u>운영과</u> 를 둔다.	제22조(사업소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환경친화사업소에는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를 둔다.</u> 4. 고양시 도서관센터에는 <u>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u> 를 둔다.
제23조(소관사무) (생략) 1.~2. (생략) <u><신 설></u> 3.~6. (생략)	제23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환경친화사업소</u> <u>가.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u> <u>나. 하천의 생태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u>다.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u> <u>라. 청소시설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u> 4.~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3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2,405명</u>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2,373명</u> 2. (생략) 3. 총계 : <u>2,405명</u>	제30조(정원의 총수) <u>2,437</u> 1. : <u>2,405명</u> 2. (현행과 같음) 3. : <u>2,437명</u>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20조관련)		[별표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20조관련)		
사업소명	위 치	사업소명	위 치	
고양푸른도시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주교동600)	고양푸른도시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주교동601)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고양시 도서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마두동 817)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고양시 여성회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8 (행신동774)	고양시 도서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고양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5번지길89 (행주내동 산12)	고양시 여성회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8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39 (풍동 162-2)	고양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5번지길89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39	

현행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32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구	동
합계		2,405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373	-					
	2급	1	1	-	-	-	-	-
	4급	17	7	1	3	3	3	-
	5급	119	34	3	5	11	27	39
	6급 이하	2,232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4	4					
	5급	1	1					
	6급상당 이하	3	3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7	-					
	연구사	7	-					

개정안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32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구	동
합계		2,437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2,405	-					
	2급	1	1	-	-	-	-	-
	4급	18	7	1	3	4	3	-
	5급	122	35	4	5	12	27	39
	6급 이하	2,260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소계	4	4					
	5급	1	1					
	6급상당 이하	3	3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7	-					
	연구사	7	-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제32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본청	창조성장개발국 마이스산업육성과	일반직 (1)	4급	1	2016.9.30	

※ 단, 인구100만 이상 증가에 따른 1국 증설 가능 시 상시기구로 전환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제32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본청	창조성장개발국 마이스산업육성과	일반직 (1)	4급	1	2016.9.30	
본청	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일반직 (1)	6급	1	2015.7.31	

※ 단, 창조성장개발국(4급)은 인구100만 이상 증가에 따른 1국 증설 가능 시 상시기구로 전환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조(사업소와 출장소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지구·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사업본부·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2.4.10>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제13조제1항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
- 지자체 주거급여 전담조직 구성관련 협조요청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확보(2014년 기준인건비 반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4년 기준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 반영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32명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임. ⇒ 4급 1명, 5급 2명, 6급이하 29명
- 채용 시기 등에 따라 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직	급	인원(명)	기준단가(백만원)	산출금액(백만원)	비 고
총계(5년간)				7,209	인건비 연간 3% 인상 추계 반영
합계(2014년)		32	-	749	2014년 6개월분
일반직		32	-	6,460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6개월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인 건 비	7,209	749	1,544	1,591	1,638	1,687

다. 재원조달방안 : 201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749	1,544	1,591	1,638	1,687	7,209
인건비		749	1,544	1,591	1,638	1,687	
재원 조달		749	1,544	1,591	1,638	1,687	7,209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조금	-	-	-	-	-	
자체 수입	소 계	749	1,544	1,591	1,638	1,687	7,209
	지방세	749	1,544	1,591	1,638	1,687	7,209
지방채			해	당	없	음	
기 금			해	당	없	음	
공기업 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해	당	없	음	